

건축 · 대수선 · 용도변경 신고필증

- 건축물의 용도/규모는 전체 건축물의 개요입니다.

[illegible]

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물의 건축·대수선·용도변경 (변경)신고서에 대하여 건축·대수선·용도변경 신고필증을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교부합니다.

이
이
이
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

직인